

등록번호	보건위생과-5749
등록일자	2016. 3. 23.
결재일자	2016. 3. 23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공중안전팀장	보건위생과장	보건소장
이철규	박미숙	김선옥	03/23 이준영
협 조	주무관 김찬미		

2016년 공중위생관리 추진계획



서대문구
보건위생과

2016년 공중위생관리 추진계획

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의 지도점검 및 서비스 수준 평가, 공중이용 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등을 실시하여 위생수준향상을 통한 구민 건강보호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

I 추진 개요

■ 추진근거

-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(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), 제9조(보고 및 출입·검사), 제13조(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)
-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 위생처리업의 위생 관리기준(보건복지부고시 제2013-162호)
-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(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-159호)

■ 추진방향

- 민관합동 지도점검으로 행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
- 구민(명예공중위생감시원)이 함께하는 투명 행정 실현
- 위생 사각지대 및 구민생활 불편사항 중점 관리
-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및 공표를 통한 우수업소에 대한 정보제공
- 찾아가는 실내공기질 측정과 원인별 개선방법 안내로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

■ 현 황

- 공중위생업소

(2016.3.15기준/개소)

총 계	숙박업	목욕장업	이용업	미용업	세탁업	위생관리 용역업	위 생 처리업	위생용품 제조업
1,135	105	31	76	715	159	44	2	3

- 공중이용시설 : 업무시설 30개소, 복합건축물 99개소 (총129개소)

II 2015년 실적 및 개선방향

■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자율점검제

○ 추진실적

-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은 '14년 3,943개소에서 '15년 3,936개소로 전년대비 점검율 **0.2% 감소**
- 영업자 자율점검 참여업소는 '14년 2,895개소에서 '15년 2,760개소로 전년대비 참여율 **4.6% 감소**

○ 평가 및 개선대책

-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자율점검 실적 감소
- 일상적인 지도점검 보다 영업자 자율점검 참여를 제고를 위하여 참여 독려를 강화하고자 함
-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시 자율점검 참여토록 협회에 홍보 협조요청
- 공중위생업소 영업자 자율점검 미참여업소 및 위생상태 미흡업소에 대하여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민·관합동으로 위생점검 실시
-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확인서 징구 후 행정처분
- 기존 및 신규 공중위생업소 위생의식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위생관리 실시

■ 공중위생수준 서비스 평가

- 평가기간 : 2015. 5월 ~ 12월
- 평가대상 : 이용업, 미용업
- 평가방법 :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평가(평가표에 의한 현장 점검)
- 평가실적

구 분	계	이용업	미용업 (일반)	미용업 (피부)	미용업 (손톱발톱)	미용업 (종합)	비 고
관내업소수(A)	781	75	548	88	17	53	평가미실시 : 16개소(무단폐업)
평가업소수(B)	765	74	541	81	16	53	
평가실시율(B/A)	98%	99%	99%	92%	94%	100%	

○ 평가결과

구 분	계	이용업	미용업 (일반)	미용업 (피부)	미용업 (손톱발톱)	미용업 (종합)	비 고
계	765	74	541	81	16	53	
녹색등급	180	37	116	12	2	13	
황색등급	63	8	47	4	1	3	
백색등급	522	29	378	65	13	37	
평균득점	47점	70점	45점	41점	38점	45점	

○ 평가 및 개선대책

- **이용업**은 전반적으로 **준수사항 및 권장사항 모두 높게 평가**되었으며, 장기간 업소를 운영한 영업자가 다수로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, 설비 노후화로 세면대·소독장비에 있어서 청결상태가 부족함이 높게 나타났음
- **미용업(일반)**은 **준수사항에 대해 높게 평가**되었으나, 권장사항에서는 소독장비·물품보관함 청결상태에서 낮은 평가결과를 보였음. 외부가격 게시 대상인 면적 66㎡ 이상 업소의 경우 **가격게시 준수율이 99%**로 나타났음
- **미용업(피부)**은 **일반업소(백색등급) 비율이 80%**였으며, 준수사항 및 권장사항 모두 준수율이 낮아 영업자의 공중위생관련법 준수 및 위생의식 고취가 필요
- **미용업(손톱·발톱)**은 2013년 미용업(일반)에서 분화된 업종으로 **영업기간이 짧은 소규모 업소가 다수**이며, **일반업소(백색등급) 비율이 81%**로 가장 높은 결과가 보였고 준수사항, 권장사항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고 낮게 평가되었기에 신규 영업자에 대한 위생의식 고취 및 관리강화가 필요
- **미용업(종합)**은 준수사항 중 시설기준에 대한 준수율은 높았으나 **외부가격 게시에 대해서는 낮은 결과**를 보였으며, 권장사항에서 낮은 평가결과를 보였음
- 공중위생업소 영업자 자율점검 실시로 시설 및 위생의식 제고
- 면적 66㎡이상으로 외부가격 게시 대상 업소에 가격게시 준수 방법 등에 대한 홍보 강화
-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로 업소의 위생관리 수준향상 유도

■ 목욕장 욕조수 및 먹는물 수질검사

- 2015년에는 상하반기 총 57개소, 2014년에는 목욕장 욕조수 및 먹는물 총 109건을 수거 검사결과 모두 적합판정 받음
- 숙박·목욕업소 내 먹는 물 수질기준 적용이 「먹는물관리법」에서 「식품위생법」으로 변경되어 행정처분 기준 마련으로 수질개선과 위생수준 향상되도록 위생기준 중점 홍보

■ 공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측정

○ 실내공기질 측정결과

구분	계	공중이용시설		소규모 어린이집, 숙박업소	
		업무시설	복합건축물	소규모어린이집	숙박업소
측정시설수	90	16	59	12	3
적합시설	90	16	59	12	3
부적합시설	-	-	-	-	-

○ 평가

- 서울시 구별 측정목표 (서대문구 80개소) 보다 12.5%초과 90개소 측정결과 적합
- 근거법(공중위생관리법 등) 미비로 인한 효율적 업무추진 곤란
- *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은 있으나 강제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없어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움
- 부적합 원인별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안내

■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

-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 5개업소(100%점검)의 시설점검 및 물수건 및 냅킨, 물종이 등 8건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검사한 결과, 1건 부적합 결과가 확인되어 행정처분하였으며, 위생점검 결과 대체적으로 공중위생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음
- 시중 유통중인 위생용품(일회용의 물컵, 숟가락, 젓가락, 이쑤시개 등) 18건 수거 의뢰 검사결과 모두 적합
- 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토록 영업주의 자율점검 참여 유도
- 유통 중인 위생용품 수거검사 실시로 구민건강 위해요인 사전차단

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

- 위 측 : 11명(남2명, 여9명), 임기2년 ('15.7월 ~'17.6월)
- 직무교육 : 공중위생 관련법령 및 활동요령(역할) 등 교육
 - 정기교육 : 9회 (직무교육 1회, 서울시 민관합동점검 사전교육 8회)
 - 수시교육 : 공중위생관리 사업에 따른 점검 사전교육

■ 사업평가(개선방향)

구분	사업평가
성공요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민관합동 점검을 통한 객관성 확보(명예공중위생감시원) ○ 공중위생업소 분기별 자율적인 점검으로 영업자 스스로 위생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함으로 효율적인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수준 향상 유도
부진요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시의 경우 점검현장에서 세균오염도를 ATP측정기를 통해 업주에게 확인시킴으로 긍정적 피드백을 유도하나, 구에는 측정기가없어 대부분 담당의 직관이나 유관에 의존하여 지도점검의 실효성 및 업주의 설득력 약화 ○ 신규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사전위생교육을 필하지 않아 공중위생 관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및 시설기준등 숙지 및 위생관념 미흡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백색등급의 비율이 높음
개선방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중위생업주에게 객관적이고 실효성있는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세균 오염도 및 미생먼지 측정장비 등을 확보하여 지도점검의 객관성 및 효율성 향상 ○ 위생관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및 시설기준 등 업종별로 안내문을 제작하여 위생관리업 신규신고시 배부 ○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무등록 관광숙박업(연면적 660m²이상)에 대하여 점검반(지역활성화과, 경찰서 등)을 구성하여 실태파악 및 단속

■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

사업명	영업자 스스로 위생관리하는 자율점검 실시
사업목표	공중위생 전체업소 (숙박업,목욕장업,이용업,미용업,세탁업,위생관리용역업)
사업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점검대상 : 공중위생업소 ○ 점검주기 : 연4회 (분기별 1회) ○ 점검방법 : 영업주가 자율점검표에 따라 수기작성(우편,인터넷,팩스 등)하여 제출 <p>* 업주 스스로 목욕장 및 숙박업의 먹는물관리를 위생적으로 하도록 중점사항에 포함 시킴</p> <p>○ 시행방법</p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<p>< 제 1 단계 > 영업자 자율점검</p> <p>자율점검표에 의한 영업주 자율점검 실시,제출</p> </div> <div style="font-size: 2em;">➔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<p>< 제 2 단계 > 명예감시원 자율 지도점검</p> <p>자율점검 미 참여업소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점검 (위반업소 현장 행정지도)</p> </div> <div style="font-size: 2em;">➔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<p>< 제 3 단계 > 담당자 지도점검</p> <p>명예감시원 자율지도 결과 문제업소 및 민원 유발업소 중점관리 (행정처분 병행)</p> </div> </div>
소요예산	비 예 산

기 타	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
사업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촉인원 : 11명, 임기 2년 ('15년7월 ~ '17년6월) ○ 단체상해보험 가입 : 안전사고 대비 서울시 일괄 가입 ○ 직무교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기 직무교육 연1회, 서울시 민관합동점검 사전교육 4회 - 수시교육 : 공중위생관리 사업에 따른 점검 전 사전교육실시
소요예산	비 예 산

사업명	민·관합동 구간교차 점검 실시		
사업목표	공중위생 전체업소 (숙박업,목욕장업,이용업,미용업,세탁업,위생관리용역업)		
사업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점검대상 : 공중위생업소 ○ 점검주기 : 연4회 (분기별 1회) ○ 점 검 반 : 1조 3명 (공무원 1,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) ○ 점검방법 : 민관합동 구간교차점검(업종별 점검표에 의거 점검) ○ 점검내용 : 시설 및 설비기준,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, 기기류 오염도(ATP) 측정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업종별 중점 점검사항 		
	업 종	중 점 점 검 사 항	비 고
	숙 박 업	- 먹는물 수질기준 적정여부 - 생수병 재활용 및 침구류 재사용 여부 - ATP측정 : 냉온수기,정수기코크 등 위생	먹는물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수질검사
	세 탁 업	- 회수건조기 설치 여부 -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의 유기용제 누출 점검여부	
	목욕장업	- 욕조수 및 먹는물 수질기준 적정여부 - ATP 측정, 냉온수기, 정수기코크 및 찜질방 내 공동개인용품(베개 등) 위생상태 확인	먹는물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수질검사, 욕조수 수거검사
	이 용 업	- 칸막이 및 밀실 등 설치 여부 - 영업장면적 66㎡이상 업소의 옥외가격표시제 (최종지불요금3개이상) 게시(부착) 여부 - ATP 측정 : 빗 기위, 면도기, 전동칫솔 등 위생상태 확인	
	미 용 업	- 점빠기,긁볼뿔기,쌍커피수술,문신,박피술 등 기타 유사 의료행위 여부 - 칸막이 점검 및 소독장비 구비 여부 - 영업장면적 66㎡이상 업소의 옥외가격표시제 (최종지불요금5개이상) 게시(부착) 여부 - ATP 측정 : 미용기구, 베드 등 위생상태 확인	
	위생관리 용역업	- 종사자에 대한 약제의 취급 주의사항 요령 교육여부 - 사용장비의 안전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상태 확인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 타 : ATP 측정을 통한 위생관리 점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측정대상 : 정수기와 냉,온수기 코크, 이,미용 기구, 베개, 베드 등 개인용품 - 측정방법 및 결과조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권장치(400RLU) 초과시 현장에서 세척 후 건조하여 재측정 · 영업자에게 수치가 낮아짐을 확인시킨 후 청결관리 행정지도 		
	소요예산	비 예 산 (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시에서 일괄지급)	

사업명	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및 공표
사업목표	목욕장업 · 숙박업 · 세탁업 100%
사업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평가대상 : 295개소 (목욕장 31, 숙박 105, 세탁 159) ○ 평가인력 : 16명 (공중안전팀 5명,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1명) ○ 평가방법 : 업종별 항목표에 따라 업소방문하여 현지조사 ○ 평가내용 : 업종별 26~27개 항목 평가 및 점수별 등급부여(녹색,황색,백색) ○ 결과공표 : 위생관리 등급을 게시판(홈페이지) 등에 공표
소요예산	5,000천원

사업명	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관리										
사업목표	공중이용시설 및 법적 미규제 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(총 100개소 이상)										
사업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측정대상 : 업무시설(3,000㎡이상), 복합건축물(2,000㎡이상)중 70개소 이상 *법적 미규제 어린이 활동공간(소규모 어린이집 연면적 430㎡미만) 30개소 이상 ○ 측정반 : 1조 3명 (공무원 1,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) ○ 측정항목 : 4개항목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항 목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미세먼지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CO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CO₂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포름알데히드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기준치</td> <td>150µg/m³이하</td> <td>25ppm이하</td> <td>1,000ppm이하</td> <td>120µg/m³이하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측정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민·관합동 측정반 운영 - 황사 등 외부요인 발생 시 실내공기질 집중 측정 · 관리 - 측정대상시설에 측정일정 사전 통보 ○ 측정절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상시설 선정 및 측정안내문 발송 - 실내공기질 측정(측정기록표 작성) - 부적합시설 개선방안 안내 - 2차 재측정 (부적합시설) ○ 조치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내공기질 개선 권고 - 부적합 원인별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안내 - 1차 부적합시설 개선권고 이행여부 확인(재측정) 	항 목	미세먼지	CO	CO ₂	포름알데히드	기준치	150µg/m ³ 이하	25ppm이하	1,000ppm이하	120µg/m ³ 이하
항 목	미세먼지	CO	CO ₂	포름알데히드							
기준치	150µg/m ³ 이하	25ppm이하	1,000ppm이하	120µg/m ³ 이하							
소요예산	2,500천원										

사업명	목욕장업소 위생점검 및 욕조수 수거검사
사업목표	목욕장업 31개소 점검 (100% 점검 및 수질검사)
사업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점검대상 : 목욕장업소 31개소 (남,여탕 욕조수 각각 수거검사) ○ 점검실시 : 년2회 (상,하반기) ○ 점검자 : 1개조 3명(공무원,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명) ○ 점검방법 : 점검표에 의거 민관합동 점검 ○ 검사방법 : 욕조수 수거후 6시간이내 보건소 의약과 검사의뢰 ○ 중점 점검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설 및 설비기준 적정 유지 여부 -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적정 여부 - 목욕장 욕조의 수질기준 적합 여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검사항목 : 탁도, 과망간산칼륨 소비량, 대장균군 ○ 조치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미한 사항은 현장 즉시 시정조치 - 시설 및 위생관리기준 준수 위반시 행정처분 - 욕조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시 행정처분 (개선명령) - 행정처분(개선명령) 후 이행여부 확인 및 사후 중점관리
소요예산	1,850천원

사업명	위생처리업, 위생용품제조업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
사업목표	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 5개소 점검(100%점검)
사업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점검대상 : 5개소(위생처리업 2개소, 위생용품제조업 3개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생처리업 : 물수건을 살균,소독 등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하여 포장, 공급하는 영업 - 기타위생용품제조업 : 일회용 물컵, 숟가락, 젓가락, 이쑤시개, 위생종이를 제조하는 영업 ○ 점검방법 : 관내업소 직원1명 자체점검 ○ 점검내용 : 시설 및 설비기준, 규격 및 표시기준 적정여부, 제품 수거검사 ○ 검사기관 :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검사 ○ 기 타 : 시중 유통중인 위생용품 수거검사
소요예산	비 예 산

■ 월별 추진일정

세부사업명	구체적 사업내용	추진일정(월)												비고	
		1	2	3	4	5	6	7	8	9	10	11	12		
영업자 자율점검 (인터넷)활성화	자율점검 참여 안내문 발송														
	영업자 자율점검 실시														
	자율점검결과 전산입력, 결과분석														
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	자율점검 미 참여업소 점검 업소의 위생기준 준수여부점검														
	민관합동 구간교차 점검														
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수준 평가	담당인력 교육, 훈련 현지 조사 및 평가 실시														
실내공기질 측정관리	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실내공기 개선 권고 홍보														
목욕장 욕조수 수질검사	욕조수 수질기준 적합여부														
위생처리업 등 지도점검	위생처리업,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														

IV 법령 개정 사항

- **공중이용시설** 위생관리(실내공기질) 관련 내용 삭제(환경부에서 통합관리)
- 이·미용사 면허 결격사유 중 금지산자를 **피성년후견인**으로 변경
- 위생관리용역업 명칭을 **건물위생관리업**으로 변경
- 영업정지 기간 중 폐업신고 금지
- 행정청의 **직권말소** 신설
- 위생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, 그 내용을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함
- 이·미용사의 업무부조범위 규정
- 미신고 영업소에 대한 **영업소 폐쇄조치** 신설
- 과징금 미납 시 다시 **영업정지 처분**으로 변경처분 할 수 있도록 함
- 과징금 부과를 위한 **과세정보**를 세무관서에 **요청**할 수 있도록 함
- 법 위반 사실 공표 신설
- 폐업신고 미이행 시 부과된 과태료 삭제

V 행정 사항

■ 계획수립 및 분기별 실적보고

-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: 3월 25일(금)까지
- 분기별 실적보고 : 실내공기질 관리실적, 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(자율점검포함)
 - 보고기한 : 4월·7월·10월·1월 매 첫째주까지
 - 제출서식 : 추후 서울시 별도 통지예정
- 영업소 자율점검표 제작 · 배부 및 홍보

■ 서울행정시스템 등록관리

- **등록관리**
 - 영업신고 등 민원처리(신규, 변경신고, 폐업, 지위승계신고 등)
 - 지도점검 및 위반사항
 - 행정처분 결과(처분확정 후 즉시 입력)
- **공중위생업소 실태보고**
 - 보고대상 : 공중위생영업소 및 공중이용시설
 - 보고주기 : 매분기 (익월5일이내)
 - 보고방법 : 서울행정시스템 전송 보고
 - 보고내용 : 업소수, 위반건수, 행정처분건수, 지도점검 건수 등 끝.